



예방이 중요합니다!



소 판매시, 구입전 반드시 결핵병 검사증명서 확인



소판매시,결핵병검사증명서 반드시휴대(12개월이상소)



소구입전결핵병검사증명서 반드시확인



축사주변및내·외부 주기적으로 청소 소독



- 감염소는 살처분 전까지 격리하고 이동제한
- 감염의심소도 재검사전까지 격리 및 이동제한

- 결핵균에 유효한 소독제 이용, 제품별 희석조건 반드시 준수
- 양성소 축사 뿐만 아니라 음성소 축사, 통로, 출입구까지
- 넓은 범위에 충분히 적셔지도록 소독약 도포
- 축사내부 바닥분변 충분히 제거 후 소독

- 감염소 및 의심소 방역조치 시 개인 보호구(장갑, 마스크, 장화 등) 착용
- 살균하지 않은 우유·유제품, 생고기 및 부산물은 섭취하지 않음

가축 결핵병 의심동물 신고

1588-4060 / 9060

사람 결핵 의심환자 신고

☆ 국번없이 1339













농림축산식품부



🥟 전국한우협회





